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06
----------	-------

발의연월일 : 2025. 8. 1.

발 의 자 : 김현정 · 이병진 · 조계원
권향엽 · 한창민 · 허성무
김남근 · 이강일 · 황명선
박정현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3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324조”를 “제324조, 제408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6조의2(같은 법 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④ (생략)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 ----- ----- ----- -----제324조, 제408조의9----- ----- ----- -----.
<신 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6조의2(같은 법 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과 같음) ⑨ -----제7항까지의----- ----- ----- ----- -----.
---	---